#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  | 298,455,343 | 8,953,660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| 274,068,924 | 8,222,068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| 24,386,419  | 731,593 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24,386,419  | 731,593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  | 864,979     | 25,949    |
|      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| 377,239     | 11,317    |
|      | 새마을소득사업운영·관리특별회계      | 1,053,780   | 31,613    |
|      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  | 1,953,052   | 58,592    |
|      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1,084,609   | 32,538    |
|      | 주차장특별회계               | 456,467     | 13,694    |
|      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   | 17,591,234  | 527,737   |
|      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656,697     | 19,701    |
|      | 기반시설특별회계              | 348,362     | 10,451    |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-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
- 제 4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-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56,484천원으로 한다
-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,700,000천원으로 한다
-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